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16964
등록일자	2015.7.27.
결재일자	2015.7.27.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38세금징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직무대리	구청장
이경희	김회동	송필석	문경수	代 문경수	07/27 신연희
협조자					



체납징수 Golden time 운영!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징수 결과보고

추진성과

- 2015년 6월말 현재 **146억원 체납액 징수** (전년 동기대비 17억원 ↑)
 - 올해 구세(지방세) 징수목표액 34억 중 30억 조기징수 (진도율 89.5%)
 - 체납징수 “황금시간 (Golden time)” 운영으로 2015년 세입목표 **초과달성** 예상
-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최우수구 유력** (수상시 1억원)
- 「지난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2015년 2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매우우수**” 평가
- “강남구, 체납징수 대박성과” 등 언론보도로 우리구 위상 드높임 (중앙일보 등 22곳)

주요 추진내용

내실있는체납관리

새로운 징수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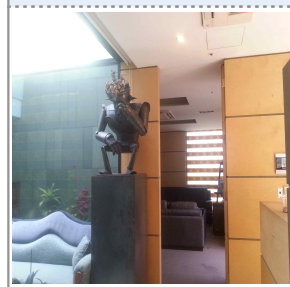
강력한 행정제재

현 장 속 으 로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동산압류 및 공매



2015. 7. 24.

강 남 구
(세 무 관 리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b style="color: green;">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기본법(부과, 징수, 체납처분 제규정) 및 국세징수법 ▶ 2015년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 (세무관리과-1791, 2015.1.23.) ▶ 2015년 체납징수 골든타임 운영계획 (세무관리과-4950, 2015.3.5.)
<b style="color: green;">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5년 세입목표 달성
<b style="color: green;">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b style="color: green;">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우리구 재정확충
<b style="color: green;">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b style="color: green;">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b style="color: green;">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체납징수 Golden time 운영 !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징수 결과보고

- ◆ 2015. 6월말 현재 146억원 체납액 징수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 예상
- ◆ 체납징수 “황금시간(Golden time)” 3월~5월 징수역량 총동원

※ 추진근거 : 구청장방침 1. 2015년 체납지방세 징수 종합계획 (세무관리과-1791, 2015.1.23.)
2. 2015년 체납징수 골든타임 운영계획 (세무관리과-4950, 2015.3.5.)

1 추진성과

- 2015. 6월말 현재 **146억원 체납액 징수 (전년 동기대비 17억원 ↑)**
 - 올해 구세(지방세) 징수목표액 34억 중 30억 조기징수 (진도율 89.5%)
 - 체납징수 “황금시간 (Golden time)” 운영으로 세입목표 초과 달성 예상
- 2015년 상반기 체납 시세 인센티브 최우수구 유력(수상시 1억원)
 - 2014.11월~2015.6월 131억원 징수 (전년대비 13억원 추가징수)
- 2015년 2분기 주요업무(208개 사업 중) 추진실적 “매우우수” 평가
- 체납 징수활동 언론보도(2015.5.27.~28.)로 우리구 위상 드높임
 - “강남구, 117억 체납징수 대박성과” 중앙일보, 세계일보 등 (총 22곳)

2 체납 징수현황

- 2015년 6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목표	징수액	전년도 징수액	전년대비 증감액	목표대비 달성율	비고
합 계	22,109	14,553	12,841	1,712 ↑	65.8 %	
시 세	18,755	11,550	10,513	1,037 ↑	61.6 %	
구 세	3,354	3,003	2,328	675 ↑	89.5 %	

3 상반기 운영내용

1. 체납징수 골든타임 “Golden time” 징수역량 총동원

- 체납발생 직후 조기 징수체제 가동, 선제적 체납자 관리로 체납 발생 최소화
- 최근 3개년 3~5월 (Golden time)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목 표 액	21,682	20,063	18,272	22,109	
체납징수액	18,300	18,062	20,042	22,109 (목표달성시)	
3~5월 징수액	7,701	7,346	10,273	10,374 (46.9%)	

2. 내실 있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관리 강화

- 압류재산 공매 의뢰 : 98건, 체납 1,820백만원
 - 부동산 공매의뢰 실적 : 18건, 체납 1,383백만원
 - 자동차 공매의뢰 실적 : 80건, 체납 437백만원
-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
 - 번호판 영치실적 : 835대, 체납 298백만원 징수
 - 영치예고 안내문 발송 : 5,517건 (2015.4.20.)
- 체납자 채권확보 : 4,019건, 체납 203억원

(단위: 건, 백만원)

물건별	압류건수	체납건수	체납액	비고
계	4,019	24,533	20,335	
부 동 산	386	2,533	5,985	
자 동 차	1,843	9,011	1,928	
환 급 금	374	2,471	1,602	
예 금 등	1,416	10,518	10,820	

○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일괄 발송 : 218,685건, 체납 2,503억원

발송 월	구분	대상인원 (명)	체납액 (억원)	월 징수액
	계	218,685	2,503	87억원
2015. 3월	체납 고지서	122,304	976	39억원
	부동산압류 예고문	3,802	475	
2015. 4월	납부촉구 안내문	83,675	602	48억원
	공공기록정보 예고	1,983	228	
	번호판 영치예고	5,517	102	
	관허사업제한예고	1,404	120	

○ 새로운 체납징수기법 도입

- 잠자고 있는 체납자의 휴면예금(5억 2천만원) 압류
 -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제공한 지방세 체납자의 휴면예금 및 보험자료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채권 일실 방지
- 납세담보제도 활용을 통한 채권확보 추진 : 255명, 체납 12,250백만원
 - “담보있는 조세”가 “압류에 의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 (2015.4.23.)이 있어, 부동산 있는 체납자에 대해 납세담보제도를 활용, 체납징수 업무에 적극 도입

3. 강력한 행정제재

○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4명, 16억원)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차 심의확정 (70명, 134억원)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포함) 3천만원 이상 체납자

○ 체납정보(공공기록정보) 제공 (1,390명, 161억원)

-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관허사업 제한 요구 (719명, 3억원)

- 지방세 3회이상 체납자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4.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 가택수색 실적 : 20명, 체납액 33억원 (총 8억원 징수)
- 동산압류 실적 : *****, 체납액 745백만원

▶ 전국지자체 최초! 체납자 동산(그림,조각상) 압류 (2015.3.18.)

· 2015.4.14. 공매의뢰 · 2015.7.16. 조각상 매각결정 (매각금액 : 3백만원)

○ 고액체납자 생활실태 조사 등 집중관리

- 끈질긴 설득과 가택수사로 개인 ***** 체납액 징수
-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경기가 좋아지면 곧 납부하겠다는 의사표현만 수차례, 이에 ***** 체납자 가택조사 및 사업장방문 등 납부독려 결과, 심리적 압박 느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체납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체납까지 일시징수

▶ 2015.4.17. 16억 5천만원 일시징수

○ 선택과 집중! 파산법인 별도관리 (13억원 징수, 2015.2.26.)

- 추진대상자 : 법인 체납 1위, 2007.9.14. 파산선고된 법인*****
- 2015.1.12. 파산법인의 신탁물건(*****) 매매사실 포착, 현장 물건 확인 및 파산관재인 최종방문 약속이행 촉구하여 2015.2.26. 13억원 일시 징수

▶ 역대 재산세 체납건수 최다(재산세 4,265건), 물건수 최다(391건)

○ 신탁물건 재산세 체납자 기획징수 (총 8억 2천만원 징수)

- 추진대상자 : ***** (체납자 39명, 42억원)
-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금지 및 납세자와 재산명의인이 달라 조세징수력 무력화 및 체납세액 누증 => 2014.1.1.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규정 => 2014년 체납이월에 따른 신탁회사 기획징수

4 향후계획

○ 2015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한 하반기 징수체제 재정립

○ 체납 업무별 상반기 평가 및 민원사항 등 세무종합 기록·체납자 정보 공유. 끝.